

7. 환자의 보장은 어떻게 되어 가고있는가 ?



1996년 환자단체과 깃소와의 협정조인식

1973년3월,미나마타병 재판으로 환자측의 승리판결이 있었으며 그 후 교섭을 통해서 동년7월 환자와 (주)깃소 사이에 보상협정이 맺어졌습니다.이 협정에 따라 인정환자에 대해서는 깃소에서 위자료로서 1600-1800만엔의 일시금이 지불되었습니다.그 외에 연금.위로금,의료수당,양호비,상제료,온천치료비,뜸치료 비용등이 지불되었습니다.또, (주)깃소가 적립하는 기금의 이자로 기저귀수당, 간호수당,마사지치료,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용 등이 지불되었습니다.

구마모토현,가고시마현 양현은 미나마타병 종합대책 사업에 따라 인정신청증이 아닌 사람으로 ,사지말단의 감각장애가 있는 어패류를 많이 먹었다고 인정되는 등의 제반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의료비의 자기 부담과 요양수당 (월액 17200엔·23500엔 2000년11월현재)을 지불하였습니다.

1995년의 정부 해결책으로 인해 의료사업의 대상자 및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된 사망자는 앞으로의 보상을 둘러싼 분쟁을 일으키지않는다는 조건으로 1996년(주)깃소와 협정을 맺어 일시금260만엔을 받았습니다.